

제 호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(장비 수리·기구류 제조·아스콘 생산·석유류 대리점·시설 복구·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용)		
업체명		대표자
소재지		전화번호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임무를 고지하니 자체 실시계획 작성 등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		
동원일	임무고지 내용	통제기관
년 월 일		
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직인		

..... 자 르 는 선

제 호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		
업체명		대표자
소재지		전화번호
수령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대표자와의 관계
	수령일	수령 장소